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 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녹색기업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함으로써 **ESG**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 **경영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**를 반영
-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* 중 **4차 산업혁명**을 기반으로 한 항공 및 로봇 분야를 전략지원부문으로 편입하여 **지역산업의 발전**을 모색
 - * 항공, 첨단자동차, 로봇, 바이오, 물류, 관광, 뷰티, 녹색기후금융
- 뿌리산업 지원을 통해 뿌리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 **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**를 도모
- 지원제외업종 등을 정비하여 **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**
- 특별지원부문 및 전략지원부문의 운용방식 변경을 통해 **금융기관간 지원형평성 문제**를 개선
- 운용기준 조문을 명료화하여 **지원자금 운용의 투명성**과 **금융기관의 편의성**을 제고

II 주요 개정 내용

- 인증방법이 법제화**되어 있는 **녹색기업** 등을 **지원대상기업**에 추가(<별표 1>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)
 -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-Biz 선정기업
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(설비인증)을 받은 기업
 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등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, 녹색사업 인증,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

- 항공, 로봇 분야를 지역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신규 편입
 - (항공)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(KSIC 31312), 항공기용 부품제조업(KSIC 31322) 및 항공산업 글로벌 인증(AS9100, NASCAP)을 받은 기업
 - (로봇) 산업용 로봇 제조업(KSIC 28280) 및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2조의 2에 의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- 뿌리기술 전문 지정기업을 소재·부품·장비 생산기업 지원대상에 추가
 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
- 수의업, 일부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제외 업종에 추가(<별표 2>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제외 업종)
 - 지원제외업종의 다른 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운용기준 변경 및 조문 정비
 - 특별지원부문의 지원대상업체를 인천본부 담당지역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(제5조 제1항 제1조)
 - 특별 및 전략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할 경우 일반전환되는 기준을 기존 금융기관의 신청에서 본부장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(제6조제5항)
 -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(제13조 제1항의 표) 및 위규제재에 따른 감축액의 배정 대상·금액의 명확화(제13조 제2항의 표)
 - 미래성장유망산업내 물류산업중 여객 관련 운송업 제외
 - 특별 및 전략지원부문 조문을 유사한 구조로 순서 및 구문 정비
 - 일부 조 순서 변경, 항 신설 또는 삭제
 - 기타 조문의 명확화 및 간소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 등

Ⅲ 시행일 및 그 밖의 조치사항

□ 시행일 : 2022. 9. 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

-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. 다만, 만기 등 변동 사유 발생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

□ 그 밖의 조치사항

- 관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에 안내